|  |  |  |
| --- | --- | --- |
| **심사비준 사항 조정에 관한** **공상총국의 공고**工商辦字[2015]75號국무원 제91차 상무회의에서 심의통과 된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정리업무 의견에 근거하여 <심사비준 사항 적시 조정 및 공표에 관한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판공실의 통지>(審改辦[2015]32號)의 요구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공상관리총국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1. 상표 등록은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에서 행정확인 성격의 사항으로 조정한다.2. 유명 상표의 인정은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에서 행정판결 성격의 사항으로 조정한다.3. 특수표지의 등기는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에서 행정확인 성격의 사항으로 조정한다.4. 특수표지 사용허가계약의 등록(備案)은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에서 행정확인 성격의 사항으로 조정한다. 위와 같이 기타 권력사항으로 조정된 상기 사항은 행정심사비준 사항에서 제외되며 오늘부로 공상관리총국 행정심사비준 목록에서 삭제한다.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기업으로 이양하다.) 및 의법행정(依法行政, 법에 의거하여 행정하다.)의 추진에 따라 국무원 부처 권력 리스트의 제정 업무와 결부시켜 상기 사항에 대해 진일보 연구, 정리 및 규범화 한다.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2015년 5월 25일 |  | **工商总局****关于调整有关审批事项的公告**工商办字〔2015〕75号　　根据国务院第91次常务会议审议通过的非行政许可审批事项清理工作意见，按照《国务院审改办关于及时调整公布审批事项的通知》（审改办函〔2015〕32号）要求，现将我局需要调整的行政审批事项公告如下：　　1.商标注册由非行政许可审批事项调整为具有行政确认性质的事项；　　2.驰名商标认定由非行政许可审批事项调整为具有行政裁决性质的事项；　　3.特殊标志登记由非行政许可审批事项调整为具有行政确认性质的事项；　　4.特殊标志使用许可合同备案由非行政许可审批事项调整为具有行政确认性质的事项。　　上述事项调整为其他权力事项后，不再属于行政审批事项，即日起从我局行政审批目录中删除。上述事项将随着简政放权和依法行政的推进，结合制定国务院部门权力清单，进一步研究、清理和规范。　　特此公告。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2015年5月25日 |